무배당 동부 스마트 퇴직연금 이율보증형보험

보험약관

무배당 동부 스마트 퇴직연금 이율보증형 보험약관

제1조 [목적]

이 약관의 목적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(이하 "법"이라 합니다) 제16조에 따라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신탁회사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의 일환으로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(이하 "회사"라 합니다)와 퇴직연금 이율보증형보험계약(이하 "계약"이라 합니다)을 체결함에 있어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 [용어의 정의]

-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1. '신탁업자'라 함은 법 제16조 제2항에 의해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신탁회사를 말합니다.
- 2. '보험료'라 함은 신탁업자가 보험계약자(이하 "계약자"로 합니다)로서 납입하는 금액을 말합니다.
- 3. '보험금'이라 함은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회사가 보험수익자(이하 "수익자"로 합니다)에 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.
-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, 동법 시행령, 동법 시행규칙(이하 "시행령", "시행규칙"이라 합니다)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.

제3조 [보험계약자,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]

이 계약의 계약자·피보험자(보험대상자) 및 수익자는 신탁업자로 합니다.

제4조 [신탁업자의 수행업무]

- ① 신탁업자는 운용관리기관이 전달한 가입자 또는 사용자의 운용지시에 의해 본 건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·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② 신탁업자는 본 건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.

제5조 [회사의 수행업무]

회사는 다음 각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.

- 1. 보험료의 수령
- 2.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의 지급
- 3. 기타 필요한 사항

제6조 [계약의 성립]

-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.
- ② 회사는 계약이 성립된 경우 지체없이 보험증권(보험가입증서)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. 다만, 전문을 통한 전자적 거래시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제7조 [보험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]

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보험약관(이하"약관"이라 합니다) 및 계약자 보관용

청약서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. 다만,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5호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(사이버몰)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거래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자문서로 송신하고 계약자가 당해 문서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드린 것으로 보며,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.

제8조 [보험기간]

본 계약의 보험기간은 회사의 승낙이 이루어진 때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.

제9조 [보험료의 납입]

-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.
- ②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.

제10조 [단위보험]

- ① 이 계약에서 "단위보험"이라 함은 회사가 계약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납입되는 보험료 별로 설정되는 것으로 하며, 각 단위보험마다 설정된 보증기간을 "이율보증기간"이라 합니다.
- ②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시 회사가 정한 이율보증형 적용이율(이하"적용이율"이라 합니다)의 보증기간 중 각 단위보험에 적용될 적용이율의 보증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, 각 단위보험을 설정한 날에 회사가 결정한 각 단위보험별 적용이율로 이율보증기간동안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(이하"산출방법서"라 합니다)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금을 계산합니다.

제11조 [적용이율]

이 계약의 적립금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월1일 및 16일에 회사가 정한 적용이율(별표1 참고)로 하며, 설정된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 동안 확정 적용합니다.

제12조 [계약의 해지]

-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
- ② 이 계약의 계약기간 중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.

제13조 [이율보증형의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]

- ① 회사는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자의 통지에 따라 수익자에게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.
- ② 회사는 계약자의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영업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.

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지급지연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까지 계산된 금액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율보증형적용이율+1%로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.

제14조 [해지환급금]

- ① 해지환급금은 단위보험 설정일부터 해당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되는 경우 시장가격조정률(별표2 참고)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, 퇴직급여의 지급 등을 위한 해지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한 해지시에는 시장가격조정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

제15조 [계약의 숭계]

계약자는 모든 권리의무를 다른 신탁업자에게 승계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계약의 효력은 변경되지 아니합니다.

제16조 [특별계정의 설정 및 운용]

회사는 본 계약을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특별계정을 설정하여 운용합니다.

제17조 [배당금의 지급]

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금이 없습니다.

제18조 [소멸시효]

수익자의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 반환청구권 등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.

제19조 [분쟁의 조정]

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 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제20조 [관할법원]

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(계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)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. 다만, 회사와 계약자가 협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정할 수 있습니다.

제21조 [약관의 해석]

-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.
-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.
-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아니합니다.

제22조 [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]

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(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)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.

제23조 [회사의 손해배상책임]

-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,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,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 및 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련 법률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.
-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,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 또는 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.
-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,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 또는 수익자의 곤궁,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.

제24조 [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]

-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효력을 잃습니다.

제25조 [준거법]

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.

제26조 [약관의 변경]

이 약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 이후 변경된 약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, 계약자에게 변경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. 단, 계약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사항의 변경은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

제27조 [예금보호에 의한 지급보장]

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됩니다. 단, 확정급여형은 예금자보호 법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이율보증형 이율의 적용방식

회사는 매월 1일, 16일에 적용이율을 결정하며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적용합니다.

1. 회사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지표금리를 기준이율으로 산출하고, 기준이율에서 시장상황, 회사손익 및 보험료 속성 등을 고려하여 각 단위보험별로 적용이율을 결정합니다. 단, 시중금리 및 기타 투자환경의 급격한 변동시 기준이율을 재산출할 수 있으며, 확정급여제도의 경우 적용이율은 단위보험 설정일에 설정된 단위보험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.

각 단위보험별 규모	최저한도	최고한도
5억원 미만	기준이율의 80%	기준이율의 165%
5억원 이상 ~ 10억원 미만		기준이율의 175%
10억원 이상 ~ 30억원 미만		기준이율의 185%
30억원 이상 ~ 100억원미만		기준이율의 195%
100억원 이상		-

(주)최고한도 산출 이율은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적용합니다.

- 2. 지표금리는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것으로서 「회사채 수익률」, 「국고채 수익률」을 가중 평균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합니다.
 - \circ 지표금리(%) = 회사채 수익률 $^{\circ}$ \times 0.3 + 국고채 수익률 $^{\circ}$ \times 0.7
 - ① 회사채 수익률 : 직전 1개월의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이율보증기간 1 년만기 회사채의 최종호가수익률의 평균
 - ② 국고채 수익률 : 직전 1개월의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이율보증기간 3년 만기 국고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의 평균
- 3. 향후 금융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이율체계에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거쳐 적용이율의 산출방식을 변경할 수 있으며, 산출 방식 변경시 그 시점에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는 각각의 보험료 납입건별로 설정된 단위보험 이율보증기간 이후부터 변경된 산출방식을 적용합니다.
- 4. 회사는 연2회 이상 적용이율의 변경내역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대표자에게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(e-mail, 전자문서, Web 등)으로 통지합니다.
- 5. 적용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2.2%를 적용합니다.
- 6. 세부적인 적용이율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운용지침을 따릅니다.

[별표2]

시장가격조정률

1. 이율보증기간 중 계약이 해지 또는 다른 단위보험으로 변경되는 경우의 시장가격조정률 (MVA) 적용

단위보험 설정일부터 해당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지 또는 다른 단위보험으로 변경되는 때에는 적립금에 (1-시장가격조정률)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합니다.

2. 시장가격조정률(MVA)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합니다.

$$MVA = \max \left[1 - \left(\frac{1+i_j}{1+i_h} \right)^{n+\frac{m}{12}}, 0 \right]$$

 i_i : j번째 설정된 단위보험에 적용되는 적용이율

n: 잔여보증기간의 연단위기간

m: 잔여보증기간의 연미만 월단위기간(월 미만 절상)

 i_k : 잔여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적용이율(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)

$$i_h = i_{h-1} + (i_{h+1} - i_{h-1}) \times \frac{m'}{12 \times n'}$$

 i_{h-1} : 해지일이 속한 달에 회사에서 공시한 잔여보증기간보다 작거나 같은 적용이율별 보증기간 중 가장 가까운 이율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적용이율. 단, 잔여보증기간이 공시되는 이율보증기간 중 최단기 이율보증기간보다 작은 경우 i_{h-1} 은 " i_{h+1} "로 하며 i_{h-1} 의 이율보증기간은 " i_{h+1} "의 이율보증기간 간"으로 합니다.

 i_{h+1} : 해지일이 속한 달에 회사에서 공시한 잔여보증기간보다 크거나 같은 적용이율 물별 보증기간 중 가장 가까운 이율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적용이율

n' : i_{h-1} 보증기간부터 i_{h+1} 보증기간까지의 연단위기간

m' : i_{h-1} 보증기간부터 잔여보증기간까지의 월단위기간(월 미만 절상)

 $i_{j} > i_{h}$ 인 경우 또는 급여의 지급인 경우에는 MVA = 0

※ 시장가격조정률(MVA)이 5% 이상인 경우는 5%를 최고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.